



의안번호	제 2024 - 21호
보 고 연 월 일	2024. 11. 1. (제135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1
II. 양형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2
1. 개요	2
2. 신규 위촉 대상자	2
3. 위촉장 수여식 개최	2
4. 양형위원 구성	2
III. 2024년도 국정감사 수감	4
1. 개요	4
2. 보고 사항	4
3.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4
IV. 영국 양형위원회 등 방문	19
1. 목적	19
2. 방문 개요	19
3. 세부 일정(안)	19
V. 2023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	20
1. 개요	20
2. 수록 내용	20
3. 2023. 4. 27. ~ 2024. 4. 26.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20

4. 추진 일정	25
VI. 천고법치문화상 수상	26
1. 개요	26
2. 시상식 일시 및 장소	26
3. 시상 내용	26
4. 참석 인원	26
VI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27
1. 손해보험협회 접수 의견 보고	27
2.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27
3. ‘법원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31
4. ‘국민신문고 게시판’ 접수 의견 보고	32
□ [별지]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35

[별첨]

- | |
|---|
| 1. 보험사기 특별가중인자의 적용 범위에 ‘자동차정비업자’를 포함할지 여
부에 대한 의견(손해보험협회, 24. 10. 14. 자)
2.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가중인자 설정 관련 의견(김시진) |
|---|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 회의	제165차	2024. 10. 21. 15:00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유기준) 검토 ○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가중인자 관련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추가 검토

II. 양형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1. 개요

- 2024. 9. 23.자 임관혁 양형위원 퇴직(해임간주)

2. 신규 위촉 대상자

-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2024. 10. 29.자)

3.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2024. 10. 29.(화) 16:30
- 장 소: 대법원 11층 대접건실
- 참석 범위: 대법원장, 위원장, 비서실장, 상임위원
- 위촉대상자: 박세현 신임 양형위원

4. 양형위원 구성

[2024. 10. 29. 기준]

지위	성명	직위	위촉일자 (임명일자)
위원장	이 상 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 4. 27.
위원 (법관)	윤 준	서울고등법원장	2023. 4. 27.
	윤 승 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3. 4. 27.
	최 환 (상임위원)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2024. 2. 13.
	정 상 규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24. 3. 25.
위원 (검사)	박 세 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24. 10. 29.
	정 희 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2024. 6. 17.

위원 (변호사)	이 재 현	변호사	2023. 4. 27.
	신 승 우	변호사	2024. 9. 30.
위원 (교수)	강 수 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 4. 27.
	김 혜 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023. 4. 27.
위원 (학식·경험)	박 장 호	MBC 보도본부장	2024. 1. 8.
	백 범 석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2023. 4. 27.

※ 신임 양형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기재와 같음

Ⅲ. 2024년도 국정감사 수감

1. 개요

- 2024. 10. 7.(월) 10:00 국회 본관 406호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실시
- 위원장이 ‘양형위원회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장 및 법제사법위원들의 구두 질의와 서면 질의에 답변

2. 보고 사항

- 양형위원회 일반현황
- 양형위원회 주요 업무
 -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 양형정책 연구·심의
 - 국민과의 소통강화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자료집 발간
 - 국제 교류
- 향후 주요 추진 업무

3.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가. 국정감사 구두질의 및 답변

(1) 주진우 위원

- [주진우 위원 질의] 기술유출범죄에 대해 양형을 올리는 것을 감명 깊게 봤으나 비판하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대응이 너무 늦음.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도 법이 통과됐는데, 양형위원회는 2년마다 한 번씩 범죄를 선정하여 대응이 늦은 문제가 있으므로 끼워 넣어서라도 빨리 양형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수정하는 작업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점이 있음. 그래서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대상군을 선정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간에 넣기도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양형위원회에 인적·물적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음

(2) 유상범 위원

- [유상범 위원 질의] 위증사건의 경우 기본 6월에서 1년6월이고 가중되면 10월에서 3년임. 위증과 위증교사 어느 게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지, 위증교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지, 위증이 신변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태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결국 김 씨의 허위증언이 무죄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판결문에서 나타나고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동종전과로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있으면 가중처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답하기 어려운 점 있음

(3) 박균택 위원

- [박균택 위원 질의] 1억의 공탁으로 23년의 양형의 차이를 가져온 사건이 있었음. 그리고 산업기술 유출 사범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율보다 집행유예 선고율이 3배가 높음. 산업기술 유출 사범은 한 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문제이고, 또 국익에도 굉장히 밀접한 문

제가 되는 것이니 형량이 좀 높아야 하는데, 우리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양형의 합리성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대구사건처럼 어느 형량이 맞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양형의 편차,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법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이 달라지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양형기준이 조금 더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표준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확보할 방법이 있겠는지 묻습니다.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양형기준제도가 시행된 가장 큰 이유가 양형편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양형위원회도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이어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양형이 어떤 것이 맞는지는 심급제도를 통해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유출, 기술침해범죄에 관해서는 양형위원회가 작년에 기술유출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완전히 새로 만들고, 중요도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많이 상향하는 쪽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앞으로는 국민들의 법감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양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박은정 위원

- [박은정 위원 질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아 최근 국회에서 양형을 높이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딥페이크 범죄자 중 51.9%가 진지한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는데 반성문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것은 논란이 큼. 또한 부적절하거나 임의적

인 감경요인이 많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으로 감형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법원도 기계적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을 감경인자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었는지를 양형인자로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번에 제가 피해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양형인자로 넣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물음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당연히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먼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는 딥페이크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기 전이어서 대상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진지하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음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피해회복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인자의 정의를 새로 바꾸어서 반성문만 써내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든지 매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 양형 감형인자로 고려되지 않도록 양형인자의 정의를 바꾸었으므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

(5) 정청래 위원장

- [정청래 위원장 질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국회에서 빨리 법을 개정하고 양형위원회도 법에 맞게 정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음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양형기준을 토대로 규범적으로 조

정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음.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생각할 때, 입법을 할 때는 굉장히 전형적이고 흉악한 범죄를 생각하고 입법을 하지만 그 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때는 그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바로 시행을 하면 부작용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음.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양형자료가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만약 규범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라도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하고 전문위원단에서 기준을 만들고, 양형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권고를 하는 그런 시간적인 절차가 필요함. 양형위원회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음

(6) 전현희 위원

- [전현희 위원 질의]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K-CP(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를 마련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양형기준에도 도입하는 협의를 시작했었는데 현재 그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만약 되고 있지 않다면 이런 K-CP를 대한민국의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여쭙겠음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뇌물 또는 배임수증죄에 관련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범죄가 2022년, 2023년에 수정이 되어서 현재 9기 양형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K-CP에 관해서 어떻게 양형인자에 고려할지를 앞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음

(7) 주진우 위원

- [주진우 위원 질의] 지금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시점부터 합리적으로 양형위원회가 ‘이번에 이 안건만큼은 좀 신속히 처리하자’라든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견을 듣고 싶음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기술침해범죄, 마약범죄, 스토킹범죄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저희로서는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한 것인데, 딥페이크 문제도 지금 그것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이미 다른 범죄가 선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 딥페이크 범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되는 점이 있음

나. 국정감사 서면질의 및 답변

(1) 박은정 위원

- [박은정 위원 서면 질의] 피해회복 판단기준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금 지급 및 구상권에 따른 구조금 변제가 양형인자 대상이 되고 있나요?

[양형위원회 서면 답변]

- 현행 양형기준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구상권에 따른 구조금 변제’를 별도의 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현행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에 관한 정의규정에 따르면, 설령 피고인이 구상권에 따른 구조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을 전제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내지 ‘상당한 피해 회복’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박은정 위원 서면 질의] 양형기준에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급 및 구상권에 따른 구조금 변제는 양형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형기준에 포함된 사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형위원회 서면 답변]

- 대부분의 실무례는 범죄피해구조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범죄피해구조금이 지급된 이후 피고인이 국가의 구상권에 따른 구조금의 변제 의무까지 이행한 경우에는 상당수의 판결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기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양형위원회에서 개별 재판의 구체적인 양형판단에 관한 원인을 분석·설명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벌은 응보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그 목적이 있고,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 '범죄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구조금의 변제 의무까지 이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범죄 후의 정황'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실제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은정 위원 서면 질의] 피해자를 위한 구조금 제도 아닙니까? 구조금의 의미도 맞지 않고 양형기준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감형시킨다면 양형기준은 왜 있는 겁니까? 구조금과 치료비 등 지원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만약 피해자 측이

구조금을 받음으로서 가해자의 형량이 감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양형위원회 서면 답변]

- 양형에 있어 회복적 사법의 측면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 피해자 관점의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 [박은정 위원 서면 질의] 국가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가 ‘피고인 조력 제도’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금 지급 및 구상권에 따른 구조금 변제가 가해자의 감경항목에서 제외 되어야 합니다. 감형기준에 구조금 제외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형위원회 서면 답변]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 양형기준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구상권에 따른 피고인의 구조금 변제를 별도의 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양형규정상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사정들이 피해 회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다만 피해 회복 등 양형인자의 정의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비에 관하여는 향후 양형위원회에서 그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은정 위원 서면 질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지?

[양형위원회 서면 답변]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실제 촬영한 영상물 못지않게 피해자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할 수 있어 허위영상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 양형위원회는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심각성,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2020. 12. 7.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면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유형을 포함하였고, 그 형량범위를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군(특수폭행, 일반체포 등)보다 규범적으로 상향하여 설정한 바 있습니다.
 - 또한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각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개정 법률들의 취지와 시행 경과 및 그에 따른 양형 실무,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박은정 위원 서면 질의] 감경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가 ‘진지한 반성’입니다. 뎃페이크 범죄자 중 51.9%가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감형 받았습니다.

[양형위원회 서면 답변]

- 형벌은 응보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그 목적이 있고, ‘진지한 반성’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인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합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형사재판에서는 ‘진지한 반성’, ‘반성, 성찰, 자백’ 또는 ‘진심 어린 사죄’를 감경사유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다만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해 회복 등 피해자의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진지한 반성’이라는 감경인자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진지한 반성’을 감경인자로 유지하면서도 그 정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원이 충실한 양형심리를 거쳐 ‘진지한 반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가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지한 반성’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향후 법원에서 양형위원회가 ‘진지한 반성’의 정의규정을 신설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진지한 반성’이라는 감경인자를 보다 신중하게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은정 위원 서면 질의] 아직도 부적절하거나 임의적인 감경요인이 많습니다. ‘합성한 사진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편집되지는 않은 점’, ‘반포된 합성사진이 일반 사진에 정액이 묻은 것처럼 편집한 정도에 그쳤고 다소 조잡함’, ‘구매자들에게 합성사진임을 고지해 판매함’ 이런 요인들이 과연 피고인의 범죄를 감형해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양형위원회 서면 답변]

-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개별 재판의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한 당부를 직접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는 양형을 결정하는 인자 자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한 양형사실들이 양형 이유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해 형이 실질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개별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감경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가중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반드시 명확한 것

은 아니고, 오히려 다른 가중인자와 결합하여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감경인자로서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다른 범죄군의 양형기준처럼 범죄행위의 특성에 따른 ‘행위인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별 책임을 평가하기 위한 ‘행위자/기타 인자’ 등 참작되어야 할 양형인자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고, 법관으로서는 사건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양형의 적정성은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서 적용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박은정 위원 서면 질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디지털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로 손 볼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양형위원회 서면 답변]

-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 회복 등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의 양형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피해자 관련 요소는 이미 실무에서 유의미한 양형인자로 다루어지고 있고,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로도 반영되어 있으며, 오히려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큰 폭으로 감경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고 비교법적으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형사사법 관행이라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형법 개정은 충분한 검토 후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 12. 7.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

준의 설정 이후에 최근 국회에서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개정 법률안들이 가결되었으므로, 향후 양형위원회에서는 개정 법률들의 취지와 시행경과 및 그에 따른 양형실무,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양형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 종합국감 서면질의 및 답변

(1) 주진우 위원

- [주진우 위원 서면질의] 양형위원회가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여 중간에 안건을 긴급하게 추가한 안건이 무엇인지, 왜 긴급하게 중간에 안건을 추가하였는지 등 세부적으로 설명 바람

[양형위원회 서면 답변]

- 양형위원회(임기: 2년)가 새로이 출범하면 통상 출범 직후 전문위원단의 검토를 거쳐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범죄를 선정하는데,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양형기준 설정의 실무상 필요성, 법령 개정에 따른 수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활동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수립된 양형기준이 시의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임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회의 일정을 정한 다음 각 심의 및 의견수렴, 의결 절차 등을 거쳐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경우 7기 양형위원회 출범 직후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해당 기수의 설정·수정 대상범죄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회의 일정 중간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 [주진우 위원 서면질의] 구체적으로 양형위원회의 인력과 예산 증원

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내용의 보고서, 어떤 근거에 따라 원하는 예산과 인력이 증원되었을 경우 국민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양형위원회에 최근 6년간 평균 몇 건의 안건을 양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는데, 인력과 예산이 증가하면 몇 건을 더 심의할 수 있는지, 양형위원회에서 긴급한 양형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 안전 선정 소위’ 등을 추가 신설할 수 있는지 설명 바람

[양형위원회 서면 답변]

-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 설정·수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수집하는 설정 대상 범죄의 확정기록(판결)의 수는 통상 최근 3~5년치 판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형자료분석관 등의 인력 증원을 통해 양형자료조사가 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면 기초자료의 신속한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양형위원회는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양형기준 적용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인력 및 예산 사정 등으로 항소심의 경우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조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형자료분석관 등의 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 등이 있게 될 경우 항소심에 관한 양형자료조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증원된 인력으로 양형기준이 설정·수정된 이후의 범죄 발생 양상 등 해당 범죄군에 대하여 미친 양형기준의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를 양형기준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양형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련 양형정책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형위원회 자료조사과에서는 2023. 1. 직제협의를 요청한 바 있고, 2025년에 다시 증원요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한편 양형기준 설정과 인공지능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통계적 추론을 하는 귀납적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계분석 과정에서

는 머신러닝, 지도학습 등을 통해 더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양형 통계 관리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자료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감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올해 「양형기준 운영점검시스템 및 양형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AI시스템 구축」 ISP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양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이용하도록 하고, 고도화된 양형 관련 업무시스템을 법관 및 법원직원에게 제공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과 양형기준의 설정·수정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예산배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ISP 사업 시행에 따른 통계업무 담당 인원이 필요하여 증원요청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업무 담당자가 통계직렬(통계주사)로서 구축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ISP 사업이 진행 중이고, 2025년부터 본 사업 진행을 위한 계획 수립, 예산 요청 및 2026년 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증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통계분석과에서는 2023. 1.부터 직제협의 및 증원요청 중에 있습니다.
- 양형위원회 최근 6년간 심사한 설정·수정한 범죄군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각 범죄군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인력과 예산에 따른 심의 증가 건수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의결일	양형기준 설정·수정 범죄군	범죄군의 수
2019년	2019. 3. 25.	• 명예훼손범죄	3건
	2019. 3. 25.	•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	
	2019. 3. 25.	• 전자금융거래범위반범죄	
2020년	2020. 1. 6.	• 선거범죄	6건

	2020. 4. 20.	• 교통범죄	
	2020. 5. 18.	• 군형법상 성범죄	
	2020. 9. 14.	• 강도범죄	
	2020. 9. 14.	• 마약범죄	
	2020. 12. 7.	• 디지털 성범죄	
2021년	2021. 3. 29.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4건
	2021. 3. 29.	• 환경범죄	
	2021. 3. 29.	• 주거침입범죄	
	2021. 12. 6.	• 전체 범죄군 합의 관련 양형인자 정비	
2022년	2022. 3. 28.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3건
	2022. 3. 28.	• 아동학대범죄	
	2022. 7. 4.	• 성범죄	
2023년	2023. 4. 24.	• 관세범죄,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4건
	2023. 4. 24.	• 교통범죄(벌금형 설정 포함)	
	2023. 4. 24.	• 43개 범죄군 양형기준 정비	
2024년	2024. 3. 25.	• 스토킹범죄(자유형 및 벌금형)	3건
	2024. 3. 25.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마약범죄	

- 다른 형사법 분야와 달리 개별 사안에서 문제되는 양형사유는 천차 만별의 사건만큼이나 매우 다양하고, 양형기준은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양형기준이 실제 사건 양상과 맞지 않아 실무에서 외면 받지 않고 실질적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양형실무의 상당한 축적과 그에 대한 면밀한 통계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 등도 거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률 개정과 양형기준의 수정 사이에는 부득이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도 아울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영국 양형위원회 등 방문

1. 목적

- 양형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외 양형위원회와의 인적 교류 활성화
- 양형 데이터 수집·분석·관리에 있어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비교법적 자료 수집, 과밀수용과 양형정책에 관한 비교법적 자료 수집, 양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방안 및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비교법적 자료 수집

2. 방문 개요

- 방 문 자 : 윤준 위원, 김혜경 위원, 백범석 위원, 운영지원단장
- 기 간 : 2024. 11. 5.(화) ~ 2024. 11. 10.(일) [4박 6일]
- 방문기관 : 영국 양형위원회, 잉글랜드·웨일즈 최고법원, 대법원, 치안판사법원

3. 세부 일정(안)

일차	월일	국가(도시)	교통편	현지시각	내용
1	11.5.(화)	한국 (인천)	KE907	10:40	인천공항 출발
		영국 (런던)		16:30	런던 공항 도착
2	11.6.(수)	영국 (런던)	차량		영국 치안판사법원 방문
3	11.7.(목)	영국 (런던)	차량		영국 양형위원회, 잉글랜드·웨일즈 최고법원 방문
4	11.8.(금)	영국 (런던)	차량		영국 대법원 방문
5	11.9.(토)	영국 (런던)	KE908		기관 방문 결과 정리
				18:50	런던 공항 출발
6	11.10.(일)	한국 (인천)		16:15	인천공항 도착

V. 2023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

1. 개요

- 2024. 4. 29. 양형위원회 제131차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 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연간보고서 발간을 추진하여 왔음

2. 수록 내용

- 2023. 4. 27. ~ 2024. 4. 26.까지의 제9기 전반기 양형위원회 활동 및 2024년도 양형위원회 활동 계획

3. 2023. 4. 27. ~ 2024. 4. 26.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가. 양형위원회 전체회의(9회)

차 수	일 시	안 건
124차	2023. 5. 9.	▪ 양형위원회 현황 등 보고
125차	2023. 6. 12.	▪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범죄 등 선정의 건
126차	2023. 8. 8.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
127차	2023. 9. 18.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
128차	2023. 11. 10.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 범위) 심의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심의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심의

차 수	일 시	안 건
128-1차	2023. 11. 21.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 범위) 심의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심의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심의
129차	2024. 1. 8.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설정안 확정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 제19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확정의 건
129-1차	2024. 1. 18.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설정안 확정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130차	2024. 3. 25.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의결 -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023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의 건

나. 전문위원 전체회의(8회)

차 수	일 시	안 건
154차	2023. 5. 22.	○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 검토 - 제출자료 · 강선주·김한울, “제9기 양형위원회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제안”
155차	2023. 7. 17.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 - 제출자료

차 수	일 시	안 건
		· 최형준,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 강선주·김한울,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분류”
156차	2023. 9. 4.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 - 제출자료 · 김용민,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 강선주,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 최형준, “마약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 김한울, “마약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검토”
157차	2023. 10. 23.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검토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검토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검토 - 제출자료 · 최형준, “지식재산권 양형기준 형량범위 수정” · 김한울,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등” · 김용민,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 정현주,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검토” · 최형준, “마약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수정” · 김한울, “마약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등”
157-1차	2023. 10. 24.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검토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검토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검토
158차	2023. 12. 4.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집행유

차 수	일 시	안 건
		예 기준) 검토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 제출자료 · 최형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등” · 김한울,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 김용민,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검토(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 정현주,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검토” · 최형준, “마약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등” · 정현주·김한울, “마약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 최형준, “공탁 등 양형인자 검토” · 정현주, “공탁 등 양형인자 검토”
159차	2023. 12. 18.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160차	2024. 3. 11.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제시된 공청회 의견, 관계기관 의견, 자문위원 의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 - 제출자료 · 이혜량,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 이성화,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관련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 검토”

차 수	일 시	안 건
		· 김용민,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 정현주,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 이해랑,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 정현주, “마약범죄 양형기준 관계기관 및 공청회 의견 검토”

다. 양형연구회 10차 심포지엄 개최(2023. 6. 26.)

-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AI와 양형’을 주제로 국내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함
 - 대주제 : 『AI와 양형』
 - 소주제 : 『AI를 이용한 양형 데이터 활용 혁신과 향후 과제』, 『AI를 이용한 국민의 건전한 범감정 수렴』

라. 양형연구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 심포지엄(2023. 9. 7.)

- 스톱킹범죄와 ‘양형’에 대하여 다각적·심층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여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함
 - 대주제 : 『스토킹범죄와 양형』
 - 소주제 : 『친밀한 파트너 스톱킹의 특성과 법·정책 대응 방안』, 『스토킹범죄의 양형 현황과 양형기준 수립 방향』

마.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9차 공청회(2024. 2. 16.)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제129차 회의(2024. 1. 8.)에서 제19차 공청회 개최 계획안을 의결하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2024. 2. 16.(월) 개최하였음(방청은 현장 방청 및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2) 주제 및 진행 경과

- 2024. 1. 18. 양형위원회 제129-1차 회의에서 의결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음
- 현장에서 시민, 기자 등 약 50명이 방청하였고,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었음

바.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치 실시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4. 추진 일정

- 연간보고서 초안 작성: 2024. 11. 초순까지
- 견본 제작: 2024. 11. 중순
- 교정 작업: 2024. 11. 하순
- 인쇄 의뢰 및 제작: 2024. 12. 초순
- 국회 보고 및 배부: 2024. 12. 중순

VI. 천고법치문화상 수상

1. 개요

- 재단법인 천고법치문화재단에서 제8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로 ‘양형위원회’ 선정
 - － 제21호 천고법치문화상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
- 2024. 10. 21. 양형위원회가 천고법치문화상(후원 법률신문사) 수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리는 공문 접수

2. 시상식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4. 11. 20. (수) 18:00
- 장 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타 서관 4층 아트홀

3. 시상 내용

- 본상 : 천고법치문화상 상패
- 부상 : 상금 3,000만원

4. 참석 인원

- 추후 확정 예정

Ⅶ.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손해보험협회 접수의견 보고

(1) 보험사기의 특별가중인자 적용범위에 ‘자동차정비업자’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2024. 10. 14.)

○ 의견서 [별첨1]

(2) 주요내용

-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및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 현황
- 자동차정비업을 하기 위한 요건
- 자동차정비업자의 보험사기 범행의 비난가능성 및 그 책임의 정도

2.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1)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2)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4. 10. 11.까지 총 17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4. 9. 2. (1)	○ 사기범죄 관련 입법 요청
2	2024. 9. 5. (1)	○ 음주운전 양형 강화 요청

3	2024. 9. 3. ~2024. 9. 22. (4)	○ 취지불명
4	2024. 9. 24. (3)	○ 반복민원
5	2024. 9. 21. (1)	○ 사기범죄 관련 입법 및 형량 강화 요청
6	2024. 9. 22. (1)	○ 양형체험프로그램 중 살인죄 관련 적용법조 수정 요청
7	2024. 9. 24. (1)	○ 반성문 감형 폐지 요청
8	2024. 9. 25. (1)	○ 보험사기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가중인 자 설정 관련 의견 제시 [별첨2]
9	2024. 10. 4. (1)	○ 조직적 사기범죄 가중 처벌 요청
10	2024. 10. 4. ~2024. 10. 6.(2)	○ 횡령 및 사기 범죄 형량 강화 요청
11	2024. 10. 6. (1)	○ 사기 및 보이스피싱 범죄 형량 강화 요청

○ 1번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법 제·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귀하의 음주운전 양형 강화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

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반복 민원으로 별도의 회신 없이 공람 종결하였습니다.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귀하의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체험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중 살인죄의 경우 피해자가 아들로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형법 제250조 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제250조 1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7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에 충실한 양형심리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 범죄군에 ‘진지한 반성’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할 때, 다수의 반성문이 제출되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 없이 반성문이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지한 반성’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귀하의 ‘진지한 반성’의 감경인자를 보다 신중하게 적용할 것을 원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8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귀하의 보험사기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가중인자 설정 관련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9번, 10번, 11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3. ‘법원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1)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4. 10. 11.까지 총 1건)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민원 요지
1	2024. 9. 27.(1)	○ 취지불명, 양형위원회 형량 강화 요청

○ 1번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귀하의 양형위원회가 전체적으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에 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4. ‘국민신문고 게시판’ 접수 의견 보고

(1)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4. 10. 11.까지 총 4건) :동일 요지 의견
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민원 요지
1	2024. 9. 9. (1)	○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2	2024. 9. 10. (1)	○ 취지불명, 마약범죄 형량 강화 요청
3	2024. 9. 19. (1)	○ 사람과 목숨과 윤리에 대한 법적 재고 요청
4	204. 10. 8. (1)	○ 경찰청 사기 범죄 수사 강화 및 양형 강화 요청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
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서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귀하의 마약범죄 형량 강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구성원의 현재 상태와 인원수를 반영’하는 것과 감경요소로 ‘상당한 피해회복’에 피해회복 금액을 상향하는 것, 또한 형량 강화 취지에 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귀하의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